

B-18 재택 근무제 지침 사례

구 분	내 용
▶ 변경내용	1) 현행 실시하고 있는 재택근무 및 무급휴직제를 재택근무제로 단일화 (통합) 및 재택근무제의 형태를 유급기간과 무급기간을 설정하여 운영 2) 무급기간은 취업규칙 제 48조 [휴직기간] 를 적용 6개월로 함.
1. 목 적	1) 건설 환경 변화에 선응하는 신축적 인력운용 방안의 하나로 재택근무 및 무급휴직제를 도입 실시한 만큼 본질목적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 정비 2) 고통분담 등 생존전략을 위한 자국책 마련은 물론, 또한 해고, 회피노력을 통한 상호신뢰하는 회사풍토 조성 3) 동절기 공사중지 현장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 실시함으로써 해당 직원들에 대한 불안감 최소화 차원
2. 대 상	1) 본부별 T/O 초과인원 (준공 등으로 인한 철수 인원 포함) 2) 동절기 공사중지현장 근무 전직원. 단, 현장유지를 위한 필요 최소인원 제외
3. 방법 및 형태	※ 재택 근무제의 형태를 유급기간과 무급기간으로 구분 1) 유급기간- ① 1차(3개월) → ② 2차(3개월) → ③ 3차(6개월) 2) 무급기간 (6개월)
4. 인사발령	1) 재택근무- 해당 본부별로 「부」 발령 ※ 유급, 무급기간에 대하여는 별도의 추가적 인사 발령없이 최초의 「부」 발령 상태로 유지

구 분	내 용
5. 급 여	1) 유급기간 ① 1차- 본사급여(본봉+시간외수당)에서 본봉 지급 (본사급여의 74%) ② 2차- 본사급여(본봉+시간외수당)에서 본봉의 70% 지급 (본사급여의 52%) ③ 3차- 본사급여(본봉+시간외수당)에서 본봉의 50% 지급 (본사급여의 37%) 2) 무급기간- 급여 미지급 3) 월중 유급기간에 대하여는 본부 「부」 발령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 4) 유급기간 중에 사내·사외교육 참가 시 해당 교육기간에 대하여는 본사급여(본봉+시간외수당) 100%적용 ※임시직원이 동절기 공사중지현장에 해당되어 실제 휴무시에는 급여의 50% 지급
6. 상 여	1) 유급기간중에 계속 근무자에게 상여를 지급할 경우 상여지급 대상기간을 2개월을 기준으로 하여 5항의 급여 지급 기준에 의거 일할 계산
7. 의료보험	1) 유급기간- 본인부담분 급여 공제 2) 무급기간- 본인부담분 급여 공제
8. 국민연금	1) 유급기간- 본인부담분 급여 공제 2) 무급기간- 납부예회 신청 (국민연금 가입기간에서 제외)

구 분	내 용
9. 학자금	1) 계속 근무자와 동일하게 혜택 부여
10. 경조비	1) 회사 및 사우회 경조비 혜택- 계속 근무자와 동일 2) 유급기간- 사우회비 급여 공제 3) 무급기간- 사우회비 미공제
11. 복리 후생제도	1) 계속 근무자와 동일하게 혜택 부여 단, 귀향여비 등의 명목으로 일시 지불되는 것은 제외
12. 승진 · 승호	1) 1차 유급기간- 정상승진, 승호 대상에 포함 2) 2차 유급기간- 별도 승호대상에 포함 (승진대상 제외 및 +1 승호 대상) 3) 3차 유급 및 무급기간- 정상 승진, 승호 대상에서 제외 4) 1)항 및 제 2)항의 정함에도 불구하고 인사고과 시점 기준 이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년도 고과에서 제외하며, 다음 연도 고과시 별도 사정대상에 포함
13. 퇴직금	1) 재택 근무기간은 평균임금산정을 위한 기간계산에 포함 2) 재택 근무기간은 평균임금은 「본봉+시간외수당」으로 함
14. 기 타 사 항	1) 재택 근무시간 동안의 급여 지급은 발생년월차 휴가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함 2) 재택근무기간 중 타사취업 등을 이유로 복직이 불가능할 경우 그 사유 발생일 전일을 기준으로 퇴직 처리 및 퇴직금 계산 3) 이 지침 시행일 이전 재택근무 및 무급휴직 해당자의 경우 이 지침 시행일 기준 이 지침 적용